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1월 15일(화) 08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최규종 전력진흥과장(02-2110-4660), 임태섭 사무관(4675)		

전기차 충전서비스, 수요관리 사업자 등록 개시
-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제48회 국무회의 통과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최중경)는 금년 5월24일 공포된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」의 **시행령안**이 **11월15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**하여 **11월25일(금) 본격 시행**된다고 밝힘

* 시행령 추진경과 : 관계부처협의(7.22~8.1) → 입법예고(7.27~8.16) → 공청회(8.29) → 규제심사(10.20) → 법제처 심사(11.8) → 차관회의(11.10)·국무회의(11.15)

○ 이로써 지난해부터 **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**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되어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**법적·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**되었다고 밝힘

□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**총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**

○ 특히, **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,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,**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**등록 절차를 마련**하고,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**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** 확정하는 한편,

*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: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·공급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
*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: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,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
*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: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,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

-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·정책목표를 담은 **5개년 기본계획수립,**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**거점지구 지정 절차** 등을 통해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

○ **기본계획 :** 중·장기 정책목표, 기술의 개발 등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필수화

○ **사업자 등록기준** :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및 각 서비스 사업자별로 필요한 인원, 자본금 등을 규정
*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: 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, 안전인증 받은 충전기 보유
*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: 기사3명(전기기사1명), 자본금 5억원이상
* 기반구축사업자(한전, 전력거래소, 구역전기사업자) : 기사3명(전기기사1명), 자본금 20억원이상

○ **거점지구 지정 :** 지능형전력망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시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수화 및 **거점지구 지정시 고려사항을 규정**
- 고려사항 :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, 주민의 호응도, 재원 조달계획 적정성 등

□ 지식경제부는 **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으로**

○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**11월 25일부터**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**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**하며,

○ **'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**을 마련하여,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,

○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**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**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

※ 이와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Korea Smart Grid Week에서 발표될 예정임

별첨 : 지능형전력망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

<별첨>

지능형전력망법·시행령(안) 주요내용

구 분	지능형전력망법(총6장 39조)	시행령(총5장 20조)	시행규칙(안)
제1장 총칙	◦ 목적, 정의, 국가등의 책무, 다른 법률과의 관계 (제1~4조)	◦ 목적(제1조)	
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	◦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·시행(제5~6조) - 기본계획은 5년마다,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-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침	◦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제2~4조) -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, **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수화 및 공고 의무**	
	◦ 사전협의(제7조)	◦ 사전협의 대상기관(제5조)	
	◦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(제8조)		
	◦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(제9조) - 전력 공급자 및 사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**기기 및 제품의 도입·교체** 등 **시기별·단계별 전환계획** 수립	◦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 수립·시행(제6조) - 기기 및 제품의 도입·교체 시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, 보급·확산 위한 지원사항, 제도개선 등	
	◦ 연구개발의 지원(제10조) - 기술개발 및 실증, 정책·제도의 개발,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	◦ 연구개발 지원대상 규정(제7조) -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지능형전력망 기술,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**표준의 개발, 기술 실증**, 연**구개발 성과 실용화 등에 지원**	
	◦ 국제협력의 추진 등(제11조) - **기후변화 대응 선도 및 해외진출 촉진**을 위해 기술·인력 교류, 국제표준화,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추진		

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	◦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·취소(제12~13조) -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장관에게 등록 - 사업유형을 기반구축사업, 기기·제품 제조사업,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분	◦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(제8조) - 지능형전력망 **사업자별 업무범위 및 이에 따른 자본금, 인적요건, 정보보호조치 계획 구비** 등을 정함	
	◦ 투자비용의 지원 등(제14조) - **공공성, 안전성 등 공익실현에 필요한 투자**를 하는 사업자에게 **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***할 수 있음	◦ 투자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정(제10조) - 투자비용 지원대상으로 **전자식 전력량계 보급**,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, 에너지 저장장치 등 **지능형전력망 기기·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·확산 등에 투자비 지원**	
	◦ 인증 및 표준화(제15~17조) - **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·상호운용성 확보**를 위해 기기 및 제품,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증 실시 및 표준화 추진	◦ 인증 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(제11~12조) - 인증기준은 지능형전력망의 **안정성·상호운용성,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** 등이 국내 또는 국제 표준에 적합토록 정함 - 인증기관의 요건으로 **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**로써 **재정적인 독립성**, **전문인력 보유** 등을 정함	
	◦ 거점지구의 지정 등(제18조) - **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의 확산**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거점지구를 지정**하고, 필요한 비용을 지원	◦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지정(제13조) - **거점지구조성 추진계획 수립의무** 및 **고려사항**,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점지구 신청시 제출 사항 등을 규정	
	◦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 및 협회 (제19~20조) - **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**하여, **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**, **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수행**	◦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요건(제14조) - 재단법인, 2년 이상의 업무수행 실정, 전담조직, 전문인력 20명이상	

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/활용 등	◆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/관리 및 개인정보의 수집 등(제21~22조) - 지능형전력망 **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·처리하여서는 아니 됨**		
	◆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, 공동 활용 및 적정성 확보(제23~24조) -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**다른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**할 수 있음	◆ 조정의 요청 및 처리(제15조) -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후 권고 가능	
	◆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수립 및 정보의 보호조치, 이행확인(제25~27조) -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·운영, 정보의 불법 유출·변조·삭제 방지, 정보보호 조직·인력 확보 등 **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**	◆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및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절차(제16~17조) - 1일평균 이용자수가 3천명 이상인 자를 정보보호 이행확인 적용 대상으로 정함	
	◆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확보(제28조) - 사업자에게 기술표준의 제정·시행, 정보의 공동활용, 서비스의 상호연동 등을 권고		
	◆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(제29조)		
제5장 보칙	◆ 자료제출, 수수료, 청문, 위임 및 위탁,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(제31~36조)	◆ 수수료, 업무의 위탁(제18~19조)	
제6장 벌칙	◆ 벌칙, 과태료(제37~39조)	◆ 과태료 부과기준(제20조)	